



제6호 행동강령 주의보 발령 (제2015-6호)



□ 발령배경

연말연시의 송년회, 인사발령 등의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성희롱 등의 비위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2015년 제6호 행동강령 주의보를 발령함

□ 발령일시 : 2015. 12. 28.

□ 발령내용 :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철저

전 직원께서는 연말연시에 음주운전, 성희롱 등의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기바라며, 최근 지방공무원법 개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개정, 지방공무원 징계 시행규칙 제정(2015. 11.19. 시행)으로 공무원 3대비위(성폭력, 금품수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내용의 언론보도 및 관계법령을 첨부하니 관련내용을 숙지하고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 시행규칙 제정](#)

※ 그동안 지방공무원의 징계양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금번 개정으로 **행자부령으로 징계양정을 정하도록하고 이에 따라 징계양정이 대폭 강화된 지방공무원 징계 시행규칙 제정 시행(2015.11.19.이후 발생 위반행위 적용)**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②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 위반 행위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나 알선 또는 청탁(이하 "지시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전·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안 되며, 배우자(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가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붙임 : 관계법령 1부. 끝.

1. 지방공무원법

[시행 2015.11.19.] [법률 제13292호, 2015.5.18.,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지방인사제도과) 02-2100-3872

제65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5.5.18.>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2.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시행 2015.11.19.] [대통령령 제26620호, 2015.11.11., 일부개정]

제8조(징계등의 양정) ① 징계등 양정(量定)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1.11.>

제8조(징계등의 양정)① 징계등 양정(量定)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징계등의 양정)① 징계등 양정(量定)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

3.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시행 2015.11.19.] [행정자치부령 제44호, 2015.11.19., 제정] 최종공포내용

행정자치부(지방인사제도과), 02-2100-387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별표 1]

장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 ¹⁾	과면	과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과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과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 ²⁾ 의 신고·고발의무 불이행	과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제7항 관련 비위	과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바. 기 타	과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과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과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과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과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 타	과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과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과면	과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과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과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과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별표 2]와 같음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 ³⁾ ,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 ⁴⁾	파면	파면~해임	강등~감봉	감봉~견책
라. 성매매 ⁵⁾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마. 음주운전	[별표 3]과 같음			
바.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1) 제1호가목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제1호라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3)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4) 제7호나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5) 제7호라목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별표 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100만 원 미 만	수동	경상계·중상계	강등 ~ 감봉	중징계	해임 ~ 정직	중징계	파면 ~ 강등
	능동	중징계	해임 ~ 정직		파면 ~ 강등		파면 ~ 해임
100만원 이상		중징계	파면 ~ 강등		파면 ~ 해임		파면
<p>※ 비고</p> <p>"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p>							

[별표 3]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유 형 별		징계요 구 (처리기 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인 경 우	경·중 징계	감봉~ 견책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 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 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 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 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 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 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 한다. 4.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란 운전원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 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 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 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한다.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경 우 또는 음주측정 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정직~ 감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정직~ 감봉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 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 감봉	중징계	정직~ 감봉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해임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 은 경우	파면~ 정직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 강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정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 정직			
운전업무 관련 공 무원이 음주운전 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 분을 받은 경우		파면~ 해임	
	운전면허 정지처 분을 받은 경우		강등~ 정직	

[별표 4]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심하 고 고의가 있는 경 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 고 중과실이거나, 비 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 고 경과실이거나, 비 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 고, 경과실인 경우
1.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의 금품, 물품, 부동산, 향응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의2 제2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 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공한 경우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의 4~5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의 3~4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의 2~3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의 1~2배	
2. 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 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의 3~5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의 2~3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의 2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의 1배	
<p>※ 비고</p> <p>1.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다만, 감면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않을 수 있다)</p> <p>2.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거나 감면의결하여야 한다.</p>					

[별표 5]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4조 관련)

업무와의 관련도	비위 행위자 (담당자)	바로 위 감독자	2단계 위의 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 사항				
· 중요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4	3	2	1
· 일반적인 사항	3	1	2	4
○ 단순·반복업무				
· 중요사항	1	2	3	4
· 경미사항	1	2	3	
○ 단독행위	1	2		

※ 비고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